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기준 분석: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김수정*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alysis of Facility Standard for Elderly Welfare Facility by Universal Design Principle and Guideline: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Soo-Ju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pplying the seven principles of the universal design.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re are few legal regulations applying the universal design i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facility standards are set on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the user, securing the space area, functional convenience, and risk prevention.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limited to the minimum standards for functional convenience and safety required for living. In conclusion,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notion of universal design,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service providers, employees, and general visitor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Principle and Guideline of Universal Design, Elderly Welfare Facility, Facility Standard

1. 서론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4,970만 6천명)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 9천명으로서 10년 전(2005년 436만 5천명)과 비교하면 약 220만 4천명이 증

가하였다[1].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0~14세)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0년 20%→2035년 28.7%→2045년 35.6%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자녀세대와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접수일(2017년 4월 27일), 수정일(1차: 2017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2017년 6월 2일)

거주하지 않는 노인세대만으로 구성된 가구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37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 3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가구의 6.4%에 해당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7.1%→1995년 9.7%→2005년 15.4%→2015년 19.5%로[1]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현상과는 반대로 유소년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도 확대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확대는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령인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의 디자인, 시설 설비의 디자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은 75,029개, 입소인원은 201,648명이며,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2011년 기준 70,643개, 입소인원은 158,839명)[3] 하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다른 시설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079개, 입소인원은 125,305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063개, 입소인원은 160,115명[3]으로 나타나서 다른 시설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뇌혈관성 질환(치매)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급여 받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직접 원인이다. 즉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 노인단독세대가구의 증가, 자녀세대의 노인부양감소, 치매노인의 증가 등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

국 이로 인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시설물 건축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생활공간을 어떠한 디자인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는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디자인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1.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2. 법률 규정의 내용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지침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창한 론 메이스(Ron Mace)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및 환경을 디자인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활발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업 제품의 개발만이 아니라 건축물 내외부의 디자인, 도시공간의 설계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배려하자’[4] 라는 철학 아래 사회적 공의를 반영하는 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초기에는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설계의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환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은 건물과 실내를 노인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한다는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이루는 환경의 형성, 사회적 역할 부여, 심리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년기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 설계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5].

론 메이스(Ron Mace)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입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디자인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이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를 설립하여 본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디자인설계를 위한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통일된 원리는 아니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는 7개의 원리(principle)와 이에 따른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적용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존 개념을 수정한 다양한 내용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의 7개 원리[6]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개 원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각 원리에 따른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실제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주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7개의 원리에 따른 각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평한 사용 :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모두에게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안전에 대한 계획 역시 동일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의 유연성 : 개인의 다양한 기호와 능력을 넓게 수용하여 사용자의 페이스(pace)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 디자인 결과물이 사용자의 경

험, 지식, 언어적 기술, 현재의 집중능력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표 2-1>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개 원리

분류	디자인 원리
1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2	사용자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4	쉽게 인지 가능한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6	물리적 노력의 최소화 (Low Physical Effort)
7	접근성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이를 위해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언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쉽게 인지 가능한 정보 : 디자인은 주변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필수 정보의 "가독성"을 극대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 즉,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쉽게 제공한다.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이나 장치를 제공한다. 다섯째, 오류에 대한 포용력 : 사용자가 우발적인 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유해한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유해 요소 제거, 격리, 위험과 오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조심해야 하는 작업에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적은 물리적 노력 : 최소한의 피로로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자연스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반복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육체적 노력을 최소화한다. 일곱째, 접근성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또는 이동에 상관없이 접근, 도달, 조작 및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편안하게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과 그립(grip)에 맞게 크기를 변형하고 보조 장치 사용 또는 개인적인 보조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6].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인권 보호 등의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평가할 때에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환경, 공간, 서비스, 제품, 건축물 등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그 개념의 중심은 사회 약자를 먼저 배려하여 이들의 사용기회를 더욱 높이는 디자인이며 이러한 측면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 약자가 사회시설과 설비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보호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조치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시설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디자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가치실현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개보수와 신축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산업경영적 측면에서도 건축공간과 환경을 좀 더 비용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전한 건축물과 실내환경이 건설된다면 이는 비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방법이다.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대상자인 노인이 숙박하면서 실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시설(예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 등)과 여가 활동이나 친목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이용시설(예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로 나눌 수 있고, 시설대상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질병, 질환,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과 정상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시설이든 노인이 장시간을 지내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서비스 대상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급여자,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임원과 직원, 그리고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복지시설은 모든 이용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다른 능력과 수준을 제한 없이 포용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공용시설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관련 법률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를 도입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 시설 이용의 편리성, 정보 접근의 편의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실현이 사회복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사회 공적 설비 및 시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동 법률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시설과 설비

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적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먼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1조) 등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은 3개 유형으로서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은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으로 2개의 유형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은 3개 유형으로서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

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가정재가의 유형과 보호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유형의 2가지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해 살펴볼 시설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해서 재검토규정(시행규칙 제36조의 2)을 두어 2년마다 시설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설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별표 2, 4, 7, 9]를 두어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서 알아보았다.

2.3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와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분석

앞에서 제시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개 주요 원리와 지침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법률상의 내용은 많지 않으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동작 편의를 위한 공간면적 확보, 기능적 편리성, 위험방지 등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내용으로 하여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시설기준 분석

시설기준의 내용	원리*
시설 유형별로 침실, 생활실 등의 1명당 기준 연면적 공간 확보	7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1, 2, 5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 확보	1, 2, 5, 7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1, 2, 5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설치	1, 2, 3, 5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	1, 5, 6
세면장 및 목욕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1, 2, 5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 설비	5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 설치	1, 2, 5, 6
자동온도조절장치 급탕은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	1, 5, 6
침실이 2층 이상 경사로 설치	5, 6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 설치	1, 4, 5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	1, 5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 사용	1, 5
치매노인의 낙상 방지 위하여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 설치	5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1, 5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부지 선정	1, 2, 7

주) 1. 공평한 사용, 2. 사용자의 유연성,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4. 쉽게 인지 가능한 정보,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6. 물리적 노력 최소화, 7. 크기와 공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처음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내용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공동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 설계를 시설대상자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기초로 허성환(2006)은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시설 내부 동선이나 순환 복도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축적인 도움장치나 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공간의 설치를 통해서 자아감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 중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둔감화 현상은 거주자의 안전사고와 직결되며, 이에 따른 안전성 계획이 요구된다. 넷째는 인간의 내·외부 시각적 접촉은 상호간 심리적 안정감과 물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며, 서로 감시하고 있다는 정서적 의존을 가지게 된다.

노인에게 있어 시각적 감시(Visual Surveillance)는 커뮤니티의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7].

허성환(2006)은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을 단순한 생활공간 이상으로 보고 심리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는 관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교류가 가능하면서도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건축물을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으로 가정하지 않고 정서적인 교류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으로 보는 확장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용생활을 이루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고려할 점이다.

3. 결론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기준으로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분석

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시설의 디자인은 주 이용자인 노인의 안전성 확보, 공간면적 확보, 기능편리성, 위험방지 등을 중심으로 시설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 내용은 일상생활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 대상자인 노인만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 직원, 일반 방문객을 모두 고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좀 더 확대 적용되는 건축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는 서비스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생의 마지막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노인의 욕구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전문가, 의료전문가, 심리전문가 그리고 건축물설계자가 협력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김수정(Soo-Jung, Kim)



- 199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문학석사)
- 2008년 2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상담(박사)
- 2004년 4월 ~ 현재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 E-Mail : kinder@scau.ac.kr

참고문헌

- [1] 통계청(2016.9), 「2016 고령자통계」.
- [2]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
- [3] 보건복지부(2015.12),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
- [4] 문호림(2008.2),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계저널, Vol. 48, No. 2, 77-79.
- [5] 강정란(2015),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의료주거단지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https://www.ncsu.edu/ncsu/design/cud/about_ud/udprinciplestext.htm.
- [7] 허성환(2007),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에 기초한 노인 복지 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